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의 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전체회의 상정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53	임종득의원	2025. 3. 10.	2025. 9. 2.
	2211331	백선희의원	2025. 7. 8.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에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산업체 등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방위사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

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u> <u>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u> <u>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u> <u>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또</u> <u>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u> <u>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u> <u>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u> <u>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u> <u>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u> <u>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u> <u>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u> <u>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u> <u>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u> <u>이행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u> <u>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u> <u>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u> <u>한다.</u> <u>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u> <u>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u> <u>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u> <u>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u> <u>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u>

<신 설>

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생략)	<u>정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24조(과태료)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u> <u>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u> <u>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u> <u>다)의 장</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